|  |  |  |
| --- | --- | --- |
| **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 진일보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1호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 심화방안>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며 세금환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이 반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연구를 거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그룹회사가 자체생산 화물로 간주되는 화물 인수에 따른 세금을 면제•공제•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룹회사 본사 또는 그가 지분을 지배하는 생산기업이 관할 국세기관에서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더 이상 그룹회사 본사 및 그가 지분을 지배하는 생산기업의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표> (또는 <수출세금환급(면제)자격 인정표>)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사항 철회를 위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미(未) 신고 또는 기(旣) 신고하였으나 처리하지 아니한 수출세금환급(면제)의 포기를 선언한 경우 수출세 환급금을 이미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 분할, 기업체제개혁 등 사유로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을 철회하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이하 '비안(備案)철회기업'으로 약칭)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관할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수출세 환급금을 이미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기업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미(未) 정산 확인서(첨부1);  (2) 기업 합병•분할•기업체제개혁 결의서, 정관 및 관련부서의 비준문서;  (3) 비안(備案)철회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업(이하 '승계기업'으로 약칭)이 비안(備案)철회기업 소재지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명 및 계좌번호.  비안(備案) 철회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기관은 비안(備案)철회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세금 환급금을 승계기업의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 초과 환급금에 대한 추징이 필요한 경우 승계기업에게 추징한다.  3. 수입화물을 재수출하는 대외무역기업은 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더 이상 수입화물 해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이 공고 공표일부터 이 공고에 의해 발표되는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신청표>(첨부2),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첨부3), <대리수입화물증명 신청표>(첨부4) 및 <대리수입화물증명>(첨부5)을 사용한다. <화물•용역 수출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24호)의 첨부28, 첨부29, 첨부33은 동시에 폐지한다.  5.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부 세무 행정심사비준사항 취소 후 관련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6호) 제5조 제2항 제5목 (2), (5)의 '이와 더불어 수입화물 해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기업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미(未) 정산 확인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4.doc>  2.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신청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5.doc>  3.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6.doc>  4. 대리수입화물증명 신청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7.doc>  5. 대리수입화물증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8.doc>  국가세무총국  2016년 1월 7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加强出口退（免）税事中事后管理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1号  　　为深入贯彻《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进一步加强出口退（免）税事中事后管理，持续优化退税服务，根据各地反映的问题及提出的建议，经研究，现就有关问题公告如下：  　　一、集团公司需要按收购视同自产货物申报免抵退税的，集团公司总部或其控股的生产企业向主管国税机关备案时，不再提供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的生产企业的《出口退（免）税备案表》（或《出口退（免）税资格认定表》）复印件。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办理撤回出口退（免）税备案事项时，如果向主管国税机关声明放弃未申报或已申报但尚未办理的出口退（免）税并按规定申报免税的，视同已结清出口退税款。  　　因合并、分立、改制重组等原因撤回出口退（免）税备案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以下简称撤回备案企业），可向主管国税机关提供以下资料，经主管国税机关核对无误后，视同已结清出口退（免）税款：  　　（一）企业撤回出口退（免）税备案未结清退（免）税确认书（附件1）；  　　（二）合并、分立、改制重组企业决议、章程及相关部门批件；  　　（三）承继撤回备案企业权利和义务的企业（以下简称承继企业）在撤回备案企业所在地的开户银行名称及账号。  　　撤回备案事项办结后，主管国税机关将撤回备案企业的应退税款退还至承继企业账户，如发生需要追缴多退税款的，向承继企业追缴。  　　三、外贸企业进口货物复出口的，申报退（免）税时不再提供进口货物报关单。  　　四、自本公告公布之日起，启用本公告制发的《来料加工免税证明申请表》（附件2）、《来料加工免税证明》（附件3）、《代理进口货物证明申请表》（附件4）和《代理进口货物证明》（附件5）。《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发布）附件28、29、33同时废止。  　　五、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部分税务行政审批事项取消后有关管理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56号）第三条第六项第3目，《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第五条第二项第5目之（2）、（5）关于“还需同时提供进口货物报关单”的内容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企业撤回出口退（免）税备案未结清退（免）税确认书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4.doc>  2.来料加工免税证明申请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5.doc>  3.来料加工免税证明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6.doc>    4.代理进口货物证明申请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7.doc>  5.代理进口货物证明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8.doc>  国家税务总局  2016年1月7日 |